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정원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4,828명 → 4,832명(+4)
 - ▶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(+4)
 - ※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
-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3)
 - 총 계: 4,828명 → 4,832명(+4)
 - 일반직: 1,698명→1,699명(+1) ▶ 5급 이하(+1)
 - 연구직: 197명→195명(△2) ▶ 연구관(+1), 연구사(△3)

- 지도직: 30명→31명(+1) ▶ 지도사(+1)
- 소방직: 2,845명(변동없음) ▶ 소방정(+1), 소방령이하(△1)
- 경찰직: 4명(+4) ▶ 경감(+4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충청북도 공무원의 정원에 반영하고,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- 안 제2조는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이 4명 증원됨에 따라, 이를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,
 - 「소방기본법」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(법률 제20156호, 2024. 1. 30., 일부개정),
 - 이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의 제명을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면서,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정하였으며,
 - 「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[별표 2] 시·도별 경찰공무원 정원표에서 충청북도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경감 4명으로 정하였는바, 특별한 이견 없음.
- 안 별표3은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(2024. 11. 15. 제출, 의안번호 제771호 조례안) 개정을 통해 조정되는 기구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, 특별한 이견 없음.